

2017년도 정기감사 결과(지방지원 운영실태)

1. 실시 목적

- ☐ 지방지원의 업무 처리 및 관리·복무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도모

2. 감사 대상 및 범위

- ☐ 대상 : 7개 지방지원 및 제주센터
 - 3개 부서 : 피해구제국(5개 지방지원, 제주센터), 서울지원, 경기지원
- ☐ 범위 : 최근 2년('15~'16년)간의 업무수행 및 관리현황 전반

3. 감사인원 및 기간

- ☐ 감사인원 : 총 3명(이경진 실장, 김수정 차장, 엄성호 대리)
- ☐ 실지감사 : 2017.4.13.(목) ~ 4.26.(수)(기간 중 7일간)

4. 감사결과

- ☐ 공직기강 실태 관련 :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
- ☐ 피해구제 접수통보서 발송 관련 : 관련 규정상 신청인이 피해구제 접수 직후 취하한 경우 외에는 접수통보서를 발송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 의뢰 사건, 재 접수 사건,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송 필요성을 고려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, 처리담당자는 사건의뢰기관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주의 필요
- ☐ 피해구제 처리기한 관련 : 기한연장 없는 처리기간 지연사례가 다발한 해당 팀 관리자 대상 주의 촉구 및 처리기한 준수 관리 강화 필요
- ☐ 특근매식비 청구 관련 : 국내출장에 따른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특근 매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, 해당 내용은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며 부재자는 특근 신청이 불가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

- 업무추진비 및 계약체결 관련 : 점검 결과 부당집행내역 없음
- 피해구제 사건보고서 작성 관련 : 피해구제 사건보고서의 ‘사건명’은 사건명만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와 신청인 요구사항을 함축하여야 하나 상담단계의 제목을 그대로 상신하는 경우가 있어 처리담당자와 팀장의 주의 필요

5. 조치결과

	지적사항	조치사항	관련부서 (관련자)
1	접수통보서에 관한 사항	(개선) 발송 예외 사유 현실화를 위한 규정 개정	피해구제국
		(통보) 의뢰기관 확인을 통한 적절한 기록관리	피해구제국, 서울지원 경기지원
2	처리기한에 관한 사항	(주의) 처리기한 초과사례 다발한 팀 관리자 주의장 발부	기획조정실 (□□지원 해당 팀장)
		(통보) 기한연장 사건 포함 처리기간 준수	피해구제국, 서울지원 경기지원
3	특근매식비 청구에 관한 사항	(개선) 예산집행관리지침 개정 시 지급 제외대상 보완	기획조정실
		(개선) 특근매식비 신청 관련 시스템 보완	경영지원실
		(통보) 특근매식비 신청 관련 직원교육 실시	피해구제국, 서울지원 경기지원
4	사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	(통보) 적절한 사건제목이 부여되도록 처리담당자 주의 및 결재권자 관리 요망	피해구제국, 서울지원 경기지원